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부터 시행합니다.

□ 추진목적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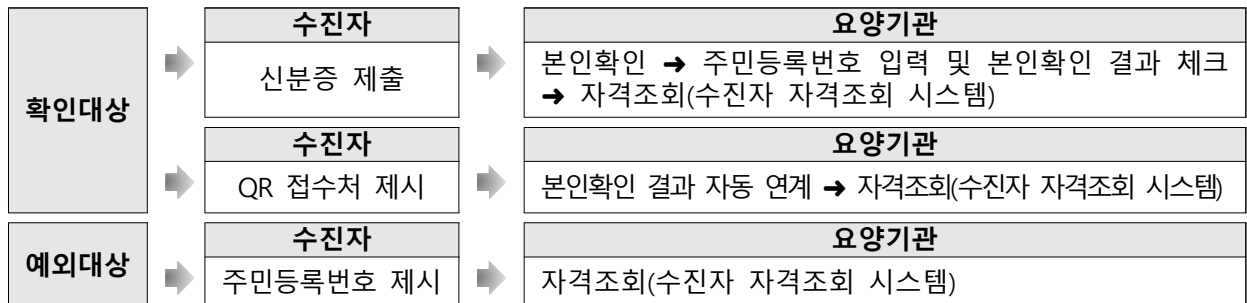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예외대상

-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제도시행 전(前) 변경 가능

□ 본인확인 절차



참고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주의) 아래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 변경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항 제11호 중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를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을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6조(모바일 건강보험증)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건강보험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이나 변동이 발생하여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3.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쿼알코드(QR code)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다.
- ⑤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 각 호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그 자격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강보험증
 2.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제출하는 서류를 받아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

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 ③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큐알코드를 입력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제2호에 따른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6.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참고 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질의응답

※ (주의) 본 질의응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작성된 초안으로 시행규칙 변경 등으로 인해 내용 수정될 수 있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질의응답

Q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A1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24.5.20. 시행)임

【 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신설) 】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Q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이유는?

A2

-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
 - 타인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방지
 -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증 도용·대여 방지

<관련 사례>

-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뎴' 1만7천여정 처방받아"('18.12.10., 파이낸셜뉴스)
- "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50대 여성 검거"('21.12.21., KBS)
-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24.01.11., 의협신문)

Q3	수진자 내원 시 본인확인 절차는?
A3	<p>○ 진료 전(前)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 확인 - 자격확인: 공단의 정보통신망(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을 통해 조회
Q4	공단이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은?
A4	<p>○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p> <p>*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 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신분증 <p>※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함(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불가)</p>
Q5	본인확인 제외 대상은?
A5	<p>○ ①19세 미만인 사람, ②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③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④진료의뢰·회송환자, ⑤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⑥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제5항)</p>
Q6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A6	<p>○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신설)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의 대상이 됨</p>

Q7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A7	<p>○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p> <p>..... 【 법 제119조(과태료) 제4항 제3호(신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p>
Q8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하여 진료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책임은?
A8	<p>○ 요양기관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음</p>
Q9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A9	<p>○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p>
Q10	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A10	<p>○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미제출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p> <p>※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바,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거부 사유에 의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음</p>
Q11	요양기관 본인확인 여부 결과 관리 방법은?
A11	<p>○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여부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를 게시 중임</p> <p>* 체크박스에 결과값 'Y' 입력</p> <p>○ 요양기관정보마당>OCS개발자지원>공지사항>프로그램개발API확인</p>

Q1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 신여권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지?

A12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과 여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과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 모두 포함)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종이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진 미부착,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해 해당 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

Q13 진료의뢰·회송 환자는 해당 진료 이후 내원 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지?

A13

- 진료의뢰·회송 환자는 진료 의뢰서 및 회송서를 지참하는 해당 진료 1회에 한하여 본인확인 예외 적용,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 내원 시 6개월 이내라도 본인확인 실시

Q14 본인확인 예외사항 중 6개월 이내 내원 환자의 기준은?

A14

- '24.5.20.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 본인확인을 한 수진자는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 받을 경우 본인확인 예외
- ※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
- *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경우

Q15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A15

- 본인확인제도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진료 받는 경우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고,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곤란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아 약제를 대신 처방받기 때문에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
-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현행 대리처방 요건에 맞게 실시함.

신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관련 질의응답

Q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란?

A1

-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 접수 가능

Q2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A2

- 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용)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다운로드
- ②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 본인확인(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로그인 방법 설정[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패턴, 지문, 얼굴)]
* (생체인증)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먼저 등록한 후 사용가능

Q3 '모바일 건강보험증' 개발 배경은?

A3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대비, 모바일 인증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한 본인 및 자격확인 수단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도모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
-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으나, 쉽고 빠른 접속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용망 구축을 통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개발
※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건강보험증도 계속 사용 가능

Q4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규 앱을 이용할 수 있나요?

A4

-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가 이용 가능
- 핸드폰인증,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가능한 가입자

Q5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핸드폰 인증과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는 사용 할 수 없나요?
A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불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3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 가능
Q6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 간편 로그인 수단이 있나요?
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턴, 지문, 얼굴 인식을 통한 생체인증 수단이 있음 ※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등록 후 사용 가능
Q7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되는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의 EMR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 할 수 있고, QR로 자격조회는 가능한지요?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기관에서 QR 인식기기(스캐너 등)와 EMR 진료접수 화면 간 연계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EMR 진료접수 화면에서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칼럼에 QR 인식기기로 받은 QR 정보 13자리(Q+숫자 12자리)가 인입 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R 정보(Q+숫자 12자리)로 수진자자격조회 가능(공단에서 개발 완료) ○ QR로 자격조회 가능함
Q8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앱 설치 후 QR코드를 요양기관에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A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설치 및 본인확인 후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의 인식기기(스캐너 등)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제출됨
Q9	요양기관에서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범용스캐너 및 키오스크에서 스캔이 가능함 ※ 스캐너 또는 키오스크와 단말기 간 연계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필요

Q10	모바일건강보험 증(QR코드 포함) 발급 및 이용 시 부담 비용이 있나요?
A10	○ 모든 비용은 무료(공단 부담)로 서비스되고 있음
Q11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11	○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은 접수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함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하여 제출(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안됨)
Q12	시범사업 요양기관에 배부된 QR 스캐너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 배부된 QR 스캐너는 배송일자로부터 1년간 무상 보증기간이며, 이 후에는 요양기관에서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함 ※ 무상 보증기간에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유상 AS를 받아야 함

참고 3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 자격확인 화면 안내

요양기관정보마당 [HOME](#) 19:59 [연결하기](#) [OCS개발자지원](#) [FAQ](#) [서식자료실](#) [원격지원](#) [프린트설정](#) [시스템오류도움말](#) [메뉴얼](#) [안내사이트](#)

기본정보	코로나19	자격확인	산정특례	치과치료	금연치료	임신출산	의료급여
연간지급	전체메뉴	허개(국과)	표준모자	호스피스	채권현황	일차만성질환	요양병원
		올바른약물	보건의료인력				

자격확인

- **수진자자격확인**
 - 진료확인번호요청
 - 진료확인번호요청(신생아/공여자)
 - 진료확인번호조회및취소
 - 진료확인번호요청중복점검
- 의료급여진료확인
- 산정특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격확인
- 해외감염병대상자조회
- 확진대상자자격확인

수진자 자격확인 본인확인완료 조회

코로나19 해외 방문 입국자 (정보 제공 종료일: 2022.09.01)

주민등록번호: [●●●●●●●●] 수진자성명: [] 진료일자: 2022.08.18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요양기관정보마당 [HOME](#)

자격확인 > 1110 수진자자격확인 [알림열기](#)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건강보험 자격정보 (2024.02.21 기준)

수진자성명		세대주성명	
자격여부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	
자격상실일자		건강보험증번호	
자격상실처리일자		출국여부	
요양병원 입원여부	N	비고	
요양병원 기관기호			
국적구분	내국인		
급여제한여부			
(회귀)의료비 지원대상	특정기호 :	종료일 :	
	시작일 :		
해외감염병 대상자 정보	정보 제공 종료일 :		
	종별 : 조회한 대상자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분만취약지 여부	N		
비대면진료 지원대상	비대면/A :		
	비대면/B :		
	비대면/D :		
	비대면/G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대상	특정기호 :	종료일 :	
	시작일 :		